

# 동성애와 교육

(1부) 2015 개정교육과정과 인권교육  
그리고 충돌의 교육현장



●장슬기 교사

현재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소장 겸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과학교사연합모임 대표이며, 다수 대안학교 설립과 교육과정에 명예교사와 협력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미래교육, 대안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과학교육에 관한 현장 연구와 강의 또한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씨앗을 다음세대에게 심는 가치로운 과정이며, 동시에 다양한 가치관들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즉 특정의 신념을 가진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국사회를 재구축하기 위해 교육의 영역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정치’가 현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라면, 미래사회를 선점하려는 전쟁터가 ‘교육’의 영역인 셈이다.

언론을 통해 교육계 곳곳에서 가치관의 충돌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1 교육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많은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내렸다. 이에 관해 기능적 정의, 규범적 정의, 준거적 정의 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교육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생략하고,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의 관점에서 교육을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서술하였다. 규범적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차별금지교육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가진 개인과 단체와 기관의 개입은, 교육계에 또다른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공교육과 평화교육의 혼란’, ‘진화론과 창조과학 논쟁’,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수시전형을 둘러싼 힘겨루기’, ‘유치원 3법의 난항’,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우선 선발권 폐지’ 등은 집단화된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국정교과서 폐기로 종료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논란은 그 정점을 보여주었다. 당시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여 서울대, 고려대 외 전국 70개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 국정 교과서 반대 및 집필거부를 선언하였었고, 479개의 시민단체 등에서 국정화 반대를 표명하였었다.

앞선 교육적 이슈들 그 이상으로 **‘인권교육의 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교육’**은 교육계에 큰 내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향방에 따라 앞으로 한국사회 미래상의 한 면이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본 인권교육,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논쟁, 교육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충돌의 상황들을 소개하려한다. 더불어 2부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시도했던 ‘동성애 바라보기’라는 수업의 단상을 나누려한다.

##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교육은 시기마다 개정되어지는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준수하여, 국가교육기관들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이 전개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기에,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은 매우 큰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교육이념은 한국교육의 대전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시대와 시기에 따라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내용의 가장 큰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 총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중핵적인 인간상으로 정의하며, 이를 위해 6가지 역량을 키우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더불어 각론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시안(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법, 평가방법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 **성소수자 즉 동성애와 관련 있는 ‘인권교육’이 포함된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권,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명기된 과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 중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이해한다. 또한, 사회 이동의 양상과 사회 계층 구조의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 복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탐색한다.

사문 04-03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문제 탐구」 중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5)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 단원은 여러 층위의 사회 문제 중 지구촌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탐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지구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탐05-01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중 매체(TV, 영화, 광고 등)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파악한다.**

사탐05-02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문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사탐05-0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사탐05-0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 및 기구(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를 탐구하고, 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한다.**

사회교과 중 「사회·문화」과목과 「사회문제 탐구」과목에는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에 대한 차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한 차별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실천하도록 성취목표로 삼고 있다. 분명 ‘인종과 민족과 신체와 종교와 빈부와 성’에 대한 차별 개선은,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평등과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영역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사회교과 중에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으며 ‘성소수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문화」과목의 ‘4. 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에서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인종, 민족, 국적, 신체, 종교, 취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성적취향으로서의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해설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의 한 축으로 ‘성소수자’가 소개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셈이다. ↓

이와 더불어 핵심적인 논쟁의 지점은, 「사회문제 탐구」과목에서 ‘사탐05-04’에 표현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 및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인권문제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 행보는 분명 한쪽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의 ‘인권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해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언급된 2015 개정교육과정과 상관없이도, 학교의 인권교육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주요 성취 기준 해설

- 사문 04-02를 통해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사문 04-03을 통해 인종, 민족, 국적, 신체, 종교, 취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성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주요 학습 요소

- 사회 불평등, 기능론, 갈등론, 사회 이동, 사회 계층 구조, 사회적 소수자, 사회 복지, 복지 제도

출처 : 「사회·문화」 중

‘인권교육’을 둘러싼 교육정책의 충돌

공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방향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뿐 아니라 국가인권정책과 교육정책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정책이 국가기관 차원에서 전개되어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를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여성·남성이 함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sup>2</sup>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현 정부에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진 개인들이나 단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새로이 수립되었는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으로 통용되어지는 이 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대변할 국회를 배제한 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모든 교육기관 등‘에 NAP의 적용·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성과 형평성을 근간으로 해서 인권정책을 주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퀴어 행사에 참여·지원을 하였으며, 차별시정의 차원을 넘어 젠더, 퀴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정성호 외 19명의 여야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가 다수의 국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10월 1일 최종 자진철회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 등 소속 공무원, 직원, 교원, 학생, 군인’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의 문제의 조항인 제 2조 1호에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지향’에 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어린이집부터 청소년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이며 성적지향이라고 가르치는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시작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시행령이 국가교육기관인 교육부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하달될 때,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금지’와 ‘인격존중’의 권고를 넘어서, 만약 ‘복지차원에서 동성애라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성적취향을 장려하는 방향’의 시행지침이 전달된다면, 교육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사회 전체가 보편적 가치의 대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종교적 교육철학이 확고한 사립학교나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된 ‘차별금지정책’의 일부 지침들이 ‘학교설립이념’과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17.12.14 국회에서 개최한 ‘여성가족부 성평등정책, 적법한가 포럼에서 강력 비판을 제기되었으며, 제 2차 기본계획안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확정하였다.

## 교육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충돌

인권교육지원법안과 차별금지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국가기관 시민단체의 정책적 충돌이 학교의 담장 밖에서 격화되고 있는 동안, 교육계와 학교현장 곳곳에서 내홍을 앓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에 노출된 교육현장에서의 격론의 과정을 몇 가지 사례로 축약해보았다.

### 서울시교육청, 매년 '소수자 학생' 차별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매년 성소수자, 장애학생, 한부모·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2일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략>

학교의 규칙도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권장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사용 금지하려면 학생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학교측이 '용모 단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신발 가방 등을 제한하는 교칙을 정할 때도 학생회와 협의해야 한다... <후략>

< 한국일보 2017. 11. 02 박세인기자 >

### “경남 학생인권조례? 학교를 동성애 교육장으로 만들려는가”

경남도 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권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를 강제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략>

제7조 1항에 보면,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얼핏 보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0조 1항에 보면,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17조 1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중략>

지난 11월 17일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는 경남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은 25.2%에 불과했으나, 반대는 두 배가 넘는 52.5%에 달하였다.

< 크리스천투데이 2018.12. 02. 이대웅 기자 >

**동성애 옹호를 의무 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결사반대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구급·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모든 국가기관 등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교육지원법은 그동안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예산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 군인 등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될 때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다... <중략>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2002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 권고하였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기를 권고하였다. 2009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였으며,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인과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다.... <중략>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천적이지 않고,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 욕망인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동성애는 결코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동성애를 인권에 포함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인권교육이라는 명문으로 동성애 옹호교육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후략>

2018년 9월 27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의 ‘소수자학생 차별조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 따르면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 제28조에는,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술된 문장 중 ‘성소수 학생에게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인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내에서의 동성 간 교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특이한 지점은,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에서 제21조인데,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성소수자학생의 권리실현을 위한 예산 자원을 배정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예산 자원 배정이 아닌, 권리를 향유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수립한다는 매우 당황스러운 문장이 담겨있다.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동성이 아닌 ‘이성교제의 권리실현을 위해 예산 자원을 배정하고, 권리를 향유하도록 지원제도를 수립하라’는 권고가 서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 교사, 학생들 모두가 당황스러운 조례라고 여길 텐데, ‘동성지향의 성소수자의 권리실현, 권리향유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수립하라’는 복지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일반인들 다수에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성소수자의 권리실현, 권리향유’라는 복지차원권고는 곧,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문화에 대한 확산을 지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소수자 차별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이주민 학생이 포겔이나 위협, 따돌림,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민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문화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이주민 학생과 다른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동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성소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 관계에 대한 중단 요구, 심리적 압박, 특정 외모에 대한 규제나 낙인, 비하나 혐오 발언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폭력, 따돌림 등을 중단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성소수자 이해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소수자 차별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7조</p>
	<p>◎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2003년                      - 당사국들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것(제2조)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근거에는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HIV/AIDS와 정신보건상태를 포함)도 포함된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p> <p>◎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0, 2009년                      - 당사국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 때문에 ... 이 규약 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성별 정체성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p>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타시도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인”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조례안에 대한 충돌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 내에서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18년 학년 초, 흥동중학교 성소수자 인권강연이 취소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날 충남 홍성군 흥동중학교에서는 한채운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채운씨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흥동중학교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로 인해 강연이 취소되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전화를 건 사람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를 조장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교육의 현장은 ‘성소수자, 동성애문화, 차별금지, 인권교육’이라는 담론에 관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특정의 신념을 가진 단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한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의 영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혼란이 점점 더 가중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본 인권교육,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논쟁, 교육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충돌의 상황들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2부에서는 필자가 교사로서 학교현장에서 시도했던 ‘동성애 바라보기’라는 수업의 단상을 나누고 싶다.